

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안내

해남고용센터 홈페이지(work.go.kr/haenam, 알림마당->공지사항)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안내 참고

가. 제도정의

-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규정에 의거 **성장유망업종** 등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
- ※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

나.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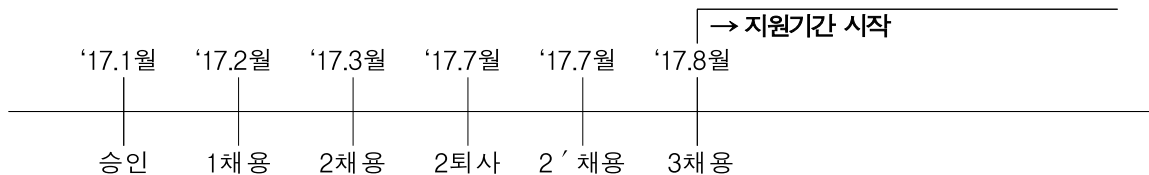
- **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**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제공 시 신청가능
- **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**가 승인 후 **1년 이내에 승인내역에 따라 사업 실시**

다. 지원 수준 및 지원인원 산정

■ 지원한도 인원은 3명(청년채용 총 9명)

- **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청년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지원**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 달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이후 승인인원에 따라 3-6-9명의 청년근로자 증가 확인 시 지원

◇ (예시) 근로자수 20명인 중소기업에서 3명을 추가 채용한 경우



* 청년 3명이 모두 재직중인 '17.8월 이후 지원이 시작됨

* 3번째 청년 채용전에 대체 채용한 2' 청년도 정규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- **지원기간 시작이후엔 매 3개월 단위(장려금 지급 단위)구간의 월평균 근로자수로 판단하여** 유지해야 하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은 **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3으로 나눈수**로 하되, 소수점이하 **첫째자리에서 반올림**
- 다만 1차 장려금에 한하여 3번째 청년을 고용하고 첫 임금지급 후 지원되므로 피보험자수 산정은 3번째 청년 고용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로 함

■ 지원금 지급구간 및 지원금액

차수	1차	2차	3차	4차	5차	6차	7차	8차	9차	10차	11차	12차
주기	1개월	4개월	7개월	10개월	13개월	16개월	19개월	22개월	25개월	28개월	31개월	36개월

- 각 회차별 500만원 한도로 3년간 6천만원 지원

■ 참여신청서 시행 전 2명이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인원 산정시 2명으로 간주하여 지원

- 아래 예시 참조

◇ (예시1) '17.2월 청년 2명 신규채용, '17.9월 참여신청서 승인, '17.9월 청년 1명 신규채용 시 지원인원은?

⇒ 사업시행 전 청년 2명을 채용하고, 참여신청서 승인이후 청년 1명을 채용하였으므로(2+1) 1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

◇ (예시2) '17.2월 청년 5명 신규채용, '17.9월 참여신청서 승인, '17.9월 청년 2명 신규채용 시 지원인원은?

⇒ '17.2월 청년 5명을 채용했더라도 승인일 전에 채용된 청년은 2명으로 간주됨. 따라서, 승인일 전 채용된 청년 2명+ 승인이후 채용된 청년 2명의 합은 4명이므로 1명분 인건비 지원

◇ (예시3) '17.2월 청년 5명 신규채용, '17.9월 참여신청서 승인, '17.9월 청년 4명 신규채용 시 지원인원은?

⇒ '17.2월 청년 5명을 채용했더라도 승인일 전에 채용된 청년은 2명으로 간주됨. 따라서, 승인일 전 채용된 청년 2명+ 승인이후 채용된 청년 4명의 합은 6명이므로 2명분 인건비만 지원

◇ (예시4) '17.6월 청년 3명 신규채용하고 '17.9월 참여신청서 제출하여 '18.9월까지 승인받은 사업주가 '18.2월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

⇒ 이 사업 시행전 채용된 청년이 지원대상 산정 시 포함되려면 적어도 '17.12월까지 청년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므로, 이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. 다만, '18.2월에 청년을 1명 채용 후 '18.9월 승인기간 내에 추가로 2명 채용했을 경우, 3번째 청년이 채용된 시점부터 지원가능

■ 지원제외 근로자

-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,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- 지원금 대상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와 동일 및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채용할 시
-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,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

■ 지원제외 사업주
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
- 임금체불중인 사업주, 신규채용 청년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 및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
- 사업계획서 제출전 3월간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제한됨
- 중복지원 제한, 고용보험료 체납시 부지급

라. 지원금 신청서류(승인사업장에 한함)

-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,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 증빙서류(계좌 이체내역 등)

마. 유의사항

-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간만 지원(총 근로자 유지가 되지 않아 부지급한 구간은 연장되어 지급되지 않음)
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시행지침 및 공고문 참조

※ 문의 :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해남고용센터(☎ 061-530-2911) (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)
FAX 0505-130-4106

<(우) 5903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해남고용복지+센터 (2층)>